

	대학특성화위원회 운영 규정	문서번호	MSU-
		제정일자	2016. 2. 19.
		최종개정일자	2020. 2. 13.
		담당부서	기획산학처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목포과학대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의 중장기발전전략에서 특성화 비전으로 제시된 헬스케어에 기반한 휴먼라이프를 선도하는 인재양성을 실효성 있게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대학특성화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업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특성화 정책 및 계획 수립
2. 특성화 분야 학위과정 발굴
3. 헬스케어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
4. 지역 산업체와 연계한 학교기업 운영
5. 헬스케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제반 사업
6. 특성화사업단 및 센터 운영
7. 특성화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
8. 그 외 사업 목적에 필요한 사업

제2장 위원회 조직

제3조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위원회의 위원은 대학 특성화 관련 학과(간호학과, 물리치료과, 치위생과, 호텔조리제빵과, 뷰티미용과, 운동건강과, 웰빙복지융합과)의 학과장과 기획산학처장, 관련 산업체 인사 등으로 구성하며,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③위원장은 대학 위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④특성화위원회의 조직체계도는 <별표 1>과 같다.

제4조(위원장의 직무)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

②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제5조(위원회의 기능) 제2조(사업)을 수행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위원회의 운영 규정 개·폐에 관한 사항
2. 사업 운영 활동에 대한 자체평가 및 보고에 관한 사항
3. 의결 사항에 대한 추진상황, 추진실적 점검·평가
4. 특성화사업단의 관리
5. 기타 특성화 사업과 관련한 제반 사항 추진

제6조(임기) ①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②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

한다.

제3장 회 의

제7조(회의) 회의는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.

- ①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
- ② 위원장이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
- ③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

제8조(의결)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가 따로 정한다.

제9조(간사)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간사 1인을 임명할 수 있다.

제10조(회의록)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, 비치하여야 하며,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들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.

제4장 특성화사업단

제11조(조직) ① 사업단에 단장을 두며,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고, 사업단의 사무를 총괄한다.

③ 사업단에 부단장을 둘 수 있으며, 전임교원 중에서 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제12조(구성) 사업단 구성은 대학과 본 사업에 적합한 지역 산업체 등으로 구성하며,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단 소속으로 관련 센터를 둘 수 있다.

제13조(업무) 대학 특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특성화 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
2. 특성화 프로그램(TOWS 프로그램, 비학위 과정, 비교과 과정 등) 운영
3. 특성화 관련 센터(웰빙헬스케어센터 등) 운영 및 관리
4. 특성화 관련 학교기업(휘트니스, 네일아트, 전통식품 등) 운영

제14조(센터) 각 헬스케어 관련 센터의 운영은 센터의 운영 규정을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.

제15조(기타) 필요 시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특성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〈별표 1〉 대학특성화위원회 조직체계도

